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보호와 언론중재위원회

장 성 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 서울제3중재부 조사관

I. 들어가며

1. 문제의 제기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또는 ‘법’) 시행 이후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정기간행물법상 언론사의 명예훼손적인 사실적 주장(주로 오보)에 대해 가능했던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 외에 새로운 청구권으로서 손해배상청구 사건이 위원회에 단독 또는 병합청구형태로 접수되어 처리되고 있다.

당초 손해배상청구를 언론중재법에 도입한 것은 손해배상을 독자적인 손해전보제도로 보기보다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 기존에 활용되어 온 원상회복방법인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주로 사실적 주장과 관련한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을 일회적 절차

내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

그런데 법 시행 후 2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초 도입 의도와는 사뭇 다르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명예 이외의 인격권’(이하 ‘기타 인격권’²⁾)의 ‘독자적이고 유효한’ 보호 장치이자 피해구제수단으로 위원회에 정착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주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의 손해 특성상 오보에 대한 정정, 반론 및 추후보도와 같은 원상회복처분으로는 그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가 어렵고, 손해(주로 정신적)를 금전으로 위자(慰藉)하는 것 외에는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구제 방법 및 피해자의 주관적인 만족 수단을 법률상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당초 손해배상에 인식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피청구인인 언론사에서조차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 실정법 및 법원 판례 등을

1) 이는 언론중재법 제14조 제1항과 제18조 제2항을 볼 때 더욱 분명해진다.

2) 현재 위원회 내에서도 학계에서도 용어의 통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필자는 인격권 침해 사건의 대부분이 명예훼손인 점을 고려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등을 ‘(명예 외) 기타 인격권’으로 묶어 명예와 대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고려할 때 면책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점을 대부분 잘 알고 있고, 법원소송절차에 드는 시간, 비용에 비해 손쉽게 피해자와 화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상 판결액에 비해 소액으로 합의할 수 있고 이미 보도된 기사를 되돌려야 하는 정정보도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까닭에 쉽게 잘못을 시인하고 위원회에서 간편하게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점도 현재 위원회에서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한 분쟁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유이다.

필자는 위원회 조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사건이 기존의 명예훼손 사건유형과 어떻게 다르며, 언론중재법상 국민의 인격권 보장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연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위원회 중사자로서 그동안 기존의 인격권 관련 연구자료들이 명예 위주의 추상적인 인격권 분류에 머물거나 미국 판례 내지 일본과 독일의 관련 법규 분석에 치우치는 점을 보고, 위원회에 축적된 기타 인격권 사례들을 우리 법체계와 현실에 맞도록 실증적이고도 귀납적인 방법으로 분석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의 목적

이 글에서는 위원회의 새로운 사건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물 및 사적 문서 등)를 이유로 한 조정·중재신청사건(주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주목하면서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법규, 특히 인격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국민의 인격권 보장원칙을 구체적으로 선언한 조항이 실정

법률상 최초로 언론중재법에 도입된 취지와 의미를 살펴보고,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사례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법 시행 후 2년간의 성과를 파악함과 함께 향후 접수되는 사건 처리에 참고토록 하며, 명예 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 판정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고찰하고 위원회가 앞으로 효과적인 인격권 분쟁 해결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앞으로 주력해야 할 점을 쓰고자 한다.

II.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현행 법률 규정

1. 일반 법률

가. 민 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89헌마160 1991. 4. 1. 민법 제764조(1958. 2. 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공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나. 형 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6조(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①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처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특별법

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

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나. 저작권법

제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과 제16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하 "저작권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16조(복제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공연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방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의 2(전송권)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2항(다만, 제1항 제1호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

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성명, 연령,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 또는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지 기타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유선 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①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절차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제8조(출판물 등으로부터의 피해자보호)·제9조(소송 진행의 협의)·제12조(간이공판절차의 결정) 및 제13조(판결 선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5조·제6조·제9조·제10조 및 제12조(제5조·제6조·제9조 및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제21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 ①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소추에 필요한 범죄구성사실을 제외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생략)
2. 제21조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자

III. 언론중재법상 인격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1. 인격권 보장 및 위법성 조각사유 규정

가. 인격권의 보장 : “언론은 생명·자유·신체·건강·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조 제1항)

나. 위법성 조각사유 : “인격권의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적인 관심사에 대하여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동법 동조 제2항)

다. 검토

(1) 법상 인격권 규정의 의의

종래 인격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선언한 제10조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한 제17조에 의해 도출되는 권리로, 법원 판

례에 의해 추상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발전되어온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자들은 이를 다양한 개념으로 규정하였는데, 김동하 판사는 인격권을 광의로는 권리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그 인격에 전속하는 모든 인격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일반적 인격권)로, 협의로는 생명·자유·신체·건강에 관한 신체적 인격권과 명예·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초상·성명·음성·대화·저작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정신적 인격권(개별적 인격권)으로 정의하고 있다.³⁾

그동안 헌법 뿐 아니라 각종 일반 법률과 특별 법률에서도 구체적으로 인격권의 개념이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이 인격권 침해 사례에서 구체적인 법원(法源)을 밝히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된 개별 법률 중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을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분하는 정도로만 인격권을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단일법으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서 최초로 인격권의 구체적인 개념을 명시하게 되었다. 그동안 사법부와 학자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개별적 인격권의 보장원칙과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을 뿐 아니라 ‘그 밖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권리’라고 하여 향후 새로이 등장하는 인격권에 대하여도 포괄적으로 대비하고 보장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⁴⁾

(2)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언론의 ‘명예’ 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에

3) 김동하,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주제논문, 2007. 9. 6. p. 15.

4) 인격권 규정이 언론중재법 총칙에 명시됨에 따라 언론중재법의 개별 조항(예를 들어 ‘피해자’ 개념을 규정한 법 제18조 제2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준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서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⁵⁾가 있는 데 반해서 언론에 의한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다.⁶⁾

위 언론중재법 규정 해석상 '기타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피해자의 승낙 또는 공적 관심사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피해자의 승낙)는 주로 일반인에게, 후자(공적 관심사 및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주로 공인 또는 각종 사건사고에 적용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전자의 경우 초상권이나 사생활 비밀 침해사건시 방송촬영 또는 사진취재 관행상 일반인에 대해 사전 또는 사후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경우에 언론사의 면책가능성이 거의 없게 된다.

2. 피해자 및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가. 피해자의 개념 :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법 제14조 제1항)

나. 손해배상청구권 규정 : "피해자는 언론에 의한 피해의 배상에 대하여 제14조 제1항의 기간 안에 중

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18조 제2항)

다. 검토

피해자 개념을 법 제14조 제1항의 문리적 해석으로 보게 되면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이 침해당한 자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로 볼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총칙의 인격권 보호 규정을 봤을 때 명백한 입법실수로 보인다. 언론의 오보로 인해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언론의 사실보도로 인해 초상권이 침해된 피해자는 손해배상이 불가능하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될 뿐만 아니라, 제5조의 인격권 보장 규정과도 상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원회 절차에서는 현행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념을 넓게 보아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조정·중재를 하고 있다.⁷⁾ 입법적 미비를 보완하고 향후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입법론적으로는 법 제18조 제2항의 "피해자"를 "언론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언론의 인격권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보도에 부수하는 강압취재 등 취재과정의 불

5)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또한 그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이를 공식화하면 언론사의 손해배상 면책조건 = [공익성 + (진실성 α 상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6) 다만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회사 직원의 불법 촬영에 대한 2006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서 대법원 최초로 초상권 개념을 정립("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하고 충돌하는 법익을 이익형량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7) 인격권 조항을 근거로 한 필자의 견해 외에도, 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의해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 뿐 아니라 반론보도청구 및 추후보도청구도 가능한 것을 들어 '피해자' 개념을 넓게 보는 견해도 있다("2006년도 정기세미나 토론 내용", 『언론중재』, 2006년 겨울호, p. 44. 참조)

법도 포함)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IV.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 사례 유형 분석

1.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에 관한 기존의 논의

기타 인격권 침해 유형과 관련한 연구는 기존에 명예를 포함한 인격권 전반에 대해서 주로 이뤄지거나 기타 인격권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인데, 안상운 변호사는 인격권 전반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면서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를 미국과 국내 판결을 참조하여 ①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또는 본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촬영한 경우, ② 타인의 주거를 무단침입하여 초상 본인 몰래 촬영한 경우, ③ 자료사진이나 화면을 초상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④ 타 매체에 실린 사진을 복제하여 무단 전재한 경우, ⑤ 정보원으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제공받아 게재한 경우, ⑥ 촬영조건과 다르게 게재된 경우, ⑦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여 사진을 사용한 경우, ⑧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을 삽입한 경우 등 8가지로 분류하였다.⁸⁾

엄동섭 교수는 언론보도와 초상 본인과의 연관성에 따라 ①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경우, ②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 내용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③ 초상 본인이 보도나 기사 내용과 전혀 무관한 경우 등으로 나눈 바 있고,⁹⁾ 한위

수 판사는 초상권 침해 유형을 ① 명예훼손적 기사에 대해 사진을 무단 게재하는 경우, ② 기사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③ 승낙 당시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초상을 공표하는 경우 등 3종류로 나누고,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을 ① 사생활의 무단공표 경우와 ② 본인이 승낙한 것과 다른 방법에 의한 사생활보도로 나눈 바 있다.¹⁰⁾

조준원¹¹⁾은 1990년대 인격권 관련 법원 판결을 모두 분석하면서 인격권 침해유형을 크게 명예훼손(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합쳐진 경우 포함), 사생활 침해(사적사항 공표, 초상권, 음성권 침해로 세 분류), 피의사실공표(범죄사건보도와 관련하여 보도대상이 된 혐의자나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신용훼손, 기타의 범주로 나눠서 분석한 바 있다.¹²⁾

2. 기타 인격권 분쟁 조정·중재사례 유형화

(2005. 7. 28. ~ 2007. 7. 31.)

가. 8개 유형으로 분류

필자는 기존 연구자들의 분류를 모두 참고하여 보도내용과의 관련성 여부, 동의범위 초과 여부, 타 매체 자료 게재 여부, 범죄피해자 및 가해자 신상공개 여부 등을 기준으로,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2005년 7월 28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접수되어 처리된 총 160건(신청건수 기준, 청구건수는 196건)의 기타 인격권 침해사례를 다음과 같이 8종류로 유

8) 안상운,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p. 39.

9) 엄동섭,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998년 여름호, pp. 28~34.

10) 한위수,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1999년 가을호, pp. 26~29.

11) 현 언론중재위원회 기획혁신팀 차장.

12) 조준원, “1990년대 언론 관련 손해배상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2000년 가을호, pp. 47~50.

형화하였다.¹³⁾

- A.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일반인의 초상(A-1) 또는 업체의 상호(A-2)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경우
- B.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의 초상(B-1) 또는 업체의 상호(B-2)를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면서 자료사진 내지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경우
- C. 촬영 당시 동의 범위 내지 사전 약속을 넘어서 부정적인 내용에 초상을 게재하거나 신상을 공개한 경우
- D. 타 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실린 사진·동영상 등을 무단 사용한 경우
- E. 범죄피해자 및 각종 사건사고 제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E-1), 범죄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 등 신원을 노출한 경우(E-2)
- F.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
- G.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낸 경우
- H. 성명권, 대화, 저작물 침해의 경우

나. 유형별로 본 기타 인격권 조정·중재사례¹⁴⁾

A-1.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일반인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한 사례

- (1) 신청인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걷는 전신 장면을 동의 없이 '봄을 맞은 대학가 미니스커트 패션 사진'으로 촬영, 게재해 초상권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03(손배); 200만 원; 합의(100만 원 상당의 현물지급: 대학 졸업 시까지 무료구독 및 발간서적

10권 지급]]

- (2) 신청인이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벚꽃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제목 '벚꽃 길따라 사랑이', '벚꽃 만끽하는 시민들')[2006서울조정129(정정·손배); 500만 원; 합의(정정 및 사과), 직권조정결정(손배 4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30(손배); 300만 원; 합의(150만 원)]
- (3) 모 케이블 방송사가 주최하는 댄스경연대회에서 젊은 여성인 신청인이 신체를 과다 노출한 채 춤추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7(손배); 700만 원; 합의(70만 원)]
- (4) 신청인의 동생이 가족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병원에 있던 신청인의 모습(모자이크 처리 안 함)과 인터뷰를 동의 없이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대전조정6(손배); 200만 원; 합의(사과)]
- (5) 모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사기 혐의자의 지명수배를 해제시켜준 사건을 보도하면서, 검찰 직원인 신청인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충북조정5(손배); 1,000만 원; 합의(대포이사 명의 사과문 발송)]
- (6) 젊은 여성들인 3명의 신청인들이 더운 여름에 컵에 든 음료수를 먹으면서 찡그린 표정으로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주위의 놀림을 받는 등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59(손배); 600만 원(각 200만 원); 합의(도합 100만 원)]
- (7) 신청인이 참여한 싱글들의 재테크 모임을 '이성에는 관심 없는 자산불리기 모임'으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실명과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

13) 8가지 유형을 침해법익별로 본다면, 초상권(A, B, C, D),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E),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 음성권(G), 성명권·대화·저작물(H)로 분류할 수 있다.

14) []안의 순서는 [사건번호: 청구액; 처리결과]임. 조정중재사례의 액수별 분류에 대해서는 김동하, 앞의 논문, p. 46.

- 례[2006서울조정289(손배); 1,000만 원; 합의(30만 원)]
- (8) 젊은 여성인 신청인이 월드컵 축구경기장에서 개성있는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보도한 후 월드컵 응원사진을 공모하는 해당 언론사 사고(社告)의 자료사진으로 다시 사용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¹⁵⁾[2006서울조정323(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200만원) 수용] [2006서울조정324(손배); 300만원; 취하]
- (9) 주유소의 유사 휘발유판매를 고발하는 보도에서 주유소 소속 직원인 신청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 없이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모자이크나 음성변조처리 없음)[2006강원조정6(손배); 1,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10) 신청인이 한 남성과 지하철에서 말싸움하는 동영상을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편집·방송하면서 초상과 음성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10(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5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411(손배); 1,000만 원; 합의(기사삭제)]
- (11) 예술가로 활동하다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된 신청인의 모습을 신청인이 촬영을 거부 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70(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판결 700만 원(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¹⁶⁾]
- (12) 잘된 패션과 안 좋은 패션을 대비하는 기사에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옷차림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86(손배); 100만 원; 합의(60만 원 상당의 현물지급)]
- (13) 고속철도역 앞의 무질서한 주차난을 보도하면서, 역 무실에 항의하는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01(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반론)->신청인 이의신청]
- (14) 대형 교통사고 참사를 다룬 프로그램에서 피해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18(손배); 3,000만 원(각 1,500만 원); 합의(각 100만 원)]
- (15) 금은방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의 동의 없이 초상과 음성을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24(손배); 500만 원; 취하(100만 원 지급)]
- (16) 아파트 공사현장에 들어온 입주예정자들을 제지하고 있는 건설회사 직원인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 안 했음)[2007충북조정1(손배); 1,800만 원; 취하(방송 다시보기 삭제 및 후속 보도 약속)] [2007충북조정2(손배); 1,950만 원; 취하(방송 다시보기 삭제 및 후속보도 약속)]
- (17) 신청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고객을 가장한 사람들이 판매용 옷에 일부러 커피를 쏟는 장면을 연출하고 이를 몰래 촬영·방영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6(손배); 250만 원; 합의(115만 원)]

15) 참고로 이 사건을 맡은 중재부장(서울제2중재부)이 신청인의 개성있는 응원모습을 일종의 상품으로 본다면 언론사의 사고(社告) 자료사진 게재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사례로 법 시행 후 최초의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주부모델)도 퍼블리시티권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로는 동부지법 2004. 2. 12. 2002가합3370 판결(항소심 조정 성립) 참조.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이를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는 김동하, 앞의 논문, pp. 33~40.

16) 서울중앙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합108300 판결. 이 외에 위원회 경우 사건의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황정규(서울제1중재부 중재부장),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과 평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주제논문, 2007. 9. pp. 2~14.

- (18) 청소년 수련관을 그만 둔 학생에 관해 취재하면서 인터뷰를 거부하는 담당 선생님인 신청인을 몰래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7(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100만 원, 수용)]
- (19) 결혼정보회사의 단체미팅행사에 참가한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한 사례[2007서울조정100(손배); 23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3(손배); 23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2007서울조정102(손배); 23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4(손배); 23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20) 지방세 체납 실태에 대해 보도하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신청인의 모습과 차량번호 등이 방송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08(손배); 3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1) 신청인이 누드 크로키 모델로 나선 현장 사진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18(손배); 2,000만 원; 합의(100만 원)]
- (22) 강풍으로 체감기온이 뚝 떨어졌다는 날씨를 보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등을 기다리며 추위로 웅크리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24(손배); 1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6(손배); 100만 원; 중재결정 30만 원]
- (23) 장애인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비리척결 대회가 직원들의 저지로 무산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34(손배); 1,000만 원 ; 합의(200만 원)]
- (24) 모 회관 수영장 재건축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한 집회 시위현장을 보도하면서, 집회 참가자와 모 회관 관

계자 간의 몸싸움을 만류하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55(손배); 400만 원; 합의(사진 삭제 및 기사말미 사과문 게재)]

- (25) 대학 축제기간 중 '편치왕 이벤트'에 참가해 주먹을 휘두르고 있는 신청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71(손배); 200만 원; 합의(50만 원)] [2007서울조정172(손배); 200만 원; 합의(50만 원)] [2007서울조정173(손배); 300만 원; 합의(100만 원)]
- (26) 모 전자상가의 강매 현장을 보도하면서 판매원인 신청인의 모습과 음성을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는 했으나 옆얼굴이 1초 정도 노출)[2007서울조정194(정정·손배); 2,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A-2. (보도내용과 직접 또는 간접 관련이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사례

- (1) 특정 회사의 특허 취득 로고를 사용하던 스포츠센터의 폐업사기를 보도하면서, 로고를 방송화면에 내보내 이를 공동사용하고 있는 신청인 회사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56(반론·손배); 322,208,200원; 반론(합의), 손배(취하)] [05서울조정57(반론·손배); 322,208,200원; 취하(반론보도)] [05서울조정58(반론·손배); 322,208,200원; 반론(합의), 손배(취하)]
- (2) 가짜 외제 담배의 불법유통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적법하게 제조하는 담배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방영해 가짜 담배로 묘사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65(정정); 조정불성립결정]
- (3) 일부 웨딩업체들의 엉터리 결혼 서비스에 관하여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업체의 상호를 모자

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4(정정·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2006서울조정35(정정·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4) 퀵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상호가 노출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9(손배); 2,000만 원; 취하(250만 원 지급)]
- (5) 일부 지하철 택배업체가 고의적으로 직원의 임금을 체불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 회사의 사무실을 무단으로 촬영·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45(손배); 2,0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 (6) 비만치료제의 실패를 보도하면서 비만치료 부작용 사례와 무관한 신청인 병원의 내·외부 전경을 방송하였고, 신청인이 처방한 약품이 간질약이기 때문에 비만치료제로서 부적절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는 하였음)[2007서울조정129(정정·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반론+동영상 삭제)->언론사 이의신청]
- (7) 식당동업자 및 피살자의 가족인 신청인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식당 간판과 전경을 방영하고 신청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 등을 동의 없이 내보내 피해를 입었다고 신청한 사례[2007강원조정3(손배); 5,000만 원; 취하(80만 원 지급)]

B-1. (보도내용과 무관한) 일반인을 동의 없이 촬영·게재하면서 자료사진 내지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사례

- (1) 이직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대형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는 신청인 모습을 자료사진으로 보도한 사례 [2006서울조정36(정정·손배); 400만 원; 합의(정

정 및 손배(50만 원))]

- (2) 신청인의 남편이 지하철역에서 실족사하는 모습을 자살 관련 보도의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84(정정·손배); 13,000만 원; 각 기각결정(당사자 불특정)]
- (3) 모 지역 구의원 당선자의 실종사건을 방송하면서 자료 화면으로 실종사건과 무관한 신청인의 유세차량과 얼굴을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6(손배); 3,000만 원; 합의(300만 원+사과문발송)]
- (4) 한의원의 보험약재 사용기피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진료하는 화면에 제3자의 목소리를 덧씌워 신청인이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하여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전북조정23(정정); 취하(자진취하)]
- (5) 여름철 피부 화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제대로 복장을 갖추지 않는 것을 들면서 신청인이 상의를 벗고 달리는 모습의 사진을 자료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77(손배); 300만 원; 합의(50만 원, 무료 구독 1년)]
- (6) 미니스커트 착용으로 인한 질병 가능성 등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하면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신청인의 전신 사진(얼굴 절반 노출 포함)을 무단으로 배경사진으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12(손배); 1,000만 원; 합의(99만 원, 해당 매체 평생무료구독, 자매지 1년 무료구독, 참고: 조정심리전 사과문 게재했음)]
- (7) 여름철 일사병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야외에서 농구를 하고 있는 신청인들을 몰래 촬영, 자료화면으로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21(손배); 400만 원(각 2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중재부 권고액을 양 당사자가 모두 거부]
- (8) 첫눈 소식으로 핸드폰 문자메시지량이 폭증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젊은 여성들인 신청인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사진(실제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카메라 사진을 보고 있었음)을 동의

없이 촬영,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 495(손배); 200만 원; 합의(각 50만 원)]

- (9) 유명 영화배우의 귀국 현장을 필사적으로 취재 중이던 신청인의 얼굴을 동의 없이 많은 취재진에 둘러싸여 비명을 지르고 있는 영화배우와 같이 촬영 게재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98(손배); 2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10) 마라톤 등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무릎 및 발목 부상에 대해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달리는 모습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15(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11) 초고속인터넷 해지 제도에 대해 보도하면서 해지 업무와 상관없는 업무에 종사 중인 신청인의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58(손배); 100만 원; 합의(49만 원)]
- (12) 시립국악원의 금품수수 논란에 대해 보도하면서 관련이 없는 신청인들의 사진을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충북조정9(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2007충북조정10(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2007충북조정11(손배); 500만 원; 합의(사과문 게재)]

B-2. (보도내용과 무관한)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한 사례

- (1) 국산 콩나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신청인 업체의 콩나물 상자를 도용하여 수입콩으로 만든 콩나물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체를 적발하는 보도에서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청인 업체의 콩나물 상자가 방영돼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8(반론·손배); 30억 원; 합의(반론), 취하(손배)]
- (2)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자

료화면으로 성폭력 사건과 아무 관련 없는 신청인 회사를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35(정정·손배); 5,500만 원; 직권조정결정(정정, 수용), 기각결정(손배-보도로 인한 피해 정도 미약)]

- (3) 위생불량업소에 대해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 없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식당 전경을 배경 화면으로 내보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39(정정·손배); 5,460만 원; 합의(정정), 취하(손배)]
- (4) 중국 정부의 한국산 김치 등의 수입금지 조치를 보도하면서 자료화면으로 이와 무관한 신청인 회사가 설립한 중국 현지 회사의 제품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돼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62(정정); 합의(정정)]
- (5) 농촌 노인들의 휴대전화에 각종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키는 등 횡포를 부리는 이동 통신 대리점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리점 전경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대구조정11(정정·손배); 500만 원; 각 직권조정결정(정정보도 및 300만 원)-> 결정 확정 전 신청인 손배금 지급받고 취하]
- (6) 모 도시 공단지역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티켓다방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다른 지역의 ‘△△다방’이라는 상호를 자료사진으로 보도해 마침 공단지역에서 동명의 다방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티켓다방 영업을 하는 것처럼 보도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416(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및 반론)]
- (7) 불법화장품을 판매한 피부관리실을 고발하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피부관리실의 상호 및 주변 전경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444(정정·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취하(손배)]
- (8) 가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남녀 간 치정관계를 다루면서 이와 무관한 신청인의 피아노 학원 전경을

동의 없이 촬영, 방송함과 아울러 치정관계에 연루된 여자가 피아노학원 소속 선생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68(정정·손배); 1,000만 원; 취하(정정보도 및 1,000만 원 지급)]

- (9) 보조금 횡령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하면서 전혀 관계없는 신청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의 사진을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광주조정5(정정·손배); 1,0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10) 경기도 모 지역의 부동산 투기현상을 보도하면서 이 지역과 관련 없는 신청인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화면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06(손배); 5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인터넷 다시보기는 삭제)]
- (11) 전자상가에서 외국산 흡시어터가 부풀려진 가격으로 판매된다고 보도하면서 신청인과 신청인이 운영하는 매장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7서울조정178(정정·손배); 6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7(정정·손배); 600만 원; 중재결정(정정 및 120만 원)]

C. 촬영 당시 동의 범위 내지 사전 약속을 넘어서 부정적인 내용에 초상을 게재하거나 신상을 공개한 사례

- (1) 환경부 국감장에서 공개된 아토피 피부염 환자인 신청인(2세)의 사진을 언론에서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05서울조정128(손배); 5,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 청년실업문제를 다루는 뉴스에서 군대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청인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내보내면서

신청인이 2년 전 서울의 한 유명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동안 계속 취업이 안 돼 아르바이트직을 전전하고 있어 방 월세를 내기도 벅차다고 보도한 사례[05서울조정207(정정·손배); 1,000만 원; 합의(정정 및 200만 원 지급)]

- (3) 애완동물 숲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사진을 찍은 후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에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받았음에도 희귀애완동물 사육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하면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17(손배); 1,000만 원; 합의(200만 원 + 포털 블로그에 떠있는 기사 삭제요청)]
- (4) 15년 전 신청인이 모 잡지에서 교정교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할 당시 찍은 사진을 창간 30주년 특집 기사에 무단으로 게재하고 성명을 오기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58(손배); 100만 원; 합의(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발송)]
- (5) 신청인이 모 드라마에 단역배우로 출연하면서 제출한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해당 드라마에서 부정적인 내용으로 내보내(이름도 성만 바뀌서 나갔음)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19(손배); 200만 원; 합의(60만 원))
- (6)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것이라고 인터뷰 의도를 밝히고 취재한 후, 부정적인 내용인 소위 '된장녀'에 대한 기사에 젊은 대학생들인 신청인들의 초상과 성명, 사적 취미 등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¹⁷⁾[2006서울조정325(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1(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700만 원] [2006서울조정326(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2(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500만 원] (참고: 심리기일 전 사과문 게재했음)

17) 위원회 최초의 중재사건이었을 뿐 아니라 이 건 접수 전후로 기타 인격권 침해 사건이 특히 폭주하여 필자가 이 논문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원; 조정불성립결정]

- (7) 386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논술시장을 석권했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학생 운동권 출신이 아닌 신청인의 수업장면을 사진으로 게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 [2006서울조정328(정정); 합의(정정+포털 등 인터넷에 있는 사진 삭제)]
- (8) 인테리어를 주제로 한 방송에 신청인 집을 내보내는 것처럼 약속하고선 신청인이 호화 주택에 살면서 사치스럽게 생활하는 사람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서울조정418(손배); 1,000만 원; 합의(150만 원)]
- (9) 커리어를 추구하는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자동차에 관한 섹션을 실으면서 젊은 직장 여성인 신청인의 전신 사진과 함께 특정 외제차를 모는 남자가 좋다고 인터뷰한 것처럼 묘사해 마치 신청인이 돈만 밝히는 여성으로 보도되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517(정정·손배); 700만 원; 합의(반론)]
- (10) 의료사고 피해자인 신청인이 피해사항을 설명하는 인터뷰 장면을 모자이크와 음성변조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송해 주위 사람들이 알아봐서 피해를 입은 사례 [2007전북조정1(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2007전북조정2(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2007전북조정3(손배); 2,000만 원; 합의(구두사과 및 PR보도)]
- (11)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의 위기를 넘긴 노부부 사연을 소개 하면서 신청인의 사진을 방송하고 신청인을 과거 불륜관계 당사자라고 묘사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3(반론·손배); 5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1(손배); 500만 원; 중재결정 250만 원]
- (12)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결혼을 주선하는 것이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보도하면서, 중개업소 직원인 신청인의 인터뷰를 동의 없이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14(손배); 1억

D. 타 매체나 홈페이지 등에 실린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 사용한 사례

- (1) 뇌졸중 관련 기사에 다른 매체에 실린 바 있는 신청인의 얼굴 사진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49(정정·손배); 300만 원; 합의(정정 및 손배 100만 원)]
- (2) 전자상가에서의 쇼핑 요령을 보도하면서 자료사진으로 신청인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사진(일종의 블로그 아트 사진이라고 주장)을 동의 없이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9(손배); 500만 원; 합의(60만 원+PR기사)]
- (3) 모 드라마에서 일반인인 신청인의 사진(인터넷에서 수집한 것으로 추정되는)을 무단으로 드라마 내용 중 현상범 포스터에 넣고, 강간 미수범이라고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3(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500만 원) 수용]
- (4) 같은 방송사의 다른 프로그램에 나간 바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신청인의 모습을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에 다시 방송(모자이크 처리는 했음)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1(손배); 2,000만 원; 직권조정결정(700만 원)->언론사 이의신청]
- (5) 1년 전 다른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나간 바 있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증상이 있는 신청인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뉴스 프로그램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46(손배); 1,400만 원(각 7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0만 원, 각 5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500만 원(각 250만 원) 지급+동영상 삭제 및 자료폐기]
- (6) 유학생할 중 나뭇가지에 맞아 골절상을 입은 후 공원

관리업체와 승사를 벌여 승소한 신청인의 사연을 보도하면서 얼굴사진과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65(손배); 2억 원; 취하(700만 원 지급)]

- (7) 이벤트업체 홈페이지에 있던 신청인이 프로포즈 받으면서 울고 있는 동영상을 동의 없이 방송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례[2007서울조정191(손배); 5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8(손배); 50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8)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을 소개하면서, 성전환한 적 없는 신청인의 사진을 성전환 전의 남자 사진으로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206(손배); 500만 원; 취하(280만 원 지급)]

E-1. 범죄피해자 또는 각종 사건사고 제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사례

- (1) 청학동의 무허가 서당 난립 실태에 대해 다루면서 신청인이 마치 제보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실명, 나이, 거주 도시를 노출한 사례[05부산조정4(손배); 3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 (2) 인터넷 뱅킹을 통한 현금인출 사고를 보도하면서 명의가 도용된 신청인의 이름을 밝혀 피해를 입은 사례 [05부산조정6(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피신청인 구두사과)] [05부산조정7(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피신청인 구두사과)] [05경남조정5(정정·손배); 500만 원; 정정 및 사과(합의), 손배(취하)] [05경남조정6(정정·손배); 각 500만 원; 정정 및 사과(합의), 손배(취하)] [05서울조정104(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05서울조정105(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05서울조정106(정정·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3)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강도를 당한 신청인의 얼굴이 찍힌 CCTV화면을 뉴스에 방영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94(손배); 1,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4) 신청인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나이, 성씨, 거주지(동) 등을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52(손배); 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53(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300만 원), 수용] [2006서울조정154(손배); 2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 판결 200만 원(피해자 인적사항 공개)¹⁸⁾]
- (5)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의 문제점을 보도하면서 피해자인 신청인의 여동생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180(손배); 9,0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6) 신청인이 2인조 성폭행범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실제는 성폭행은 아니고 미수로 확인), 아파트 CCTV에 찍힌 신청인의 모습을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 [2006부산조정8(손배); 300만 원 (위자료); 합의(200만 원)] [2006서울조정271(손배); 200만 원; 합의(200만 원)] [2006서울조정272(손배); 300만 원; 합의(200만 원)]
- (7) 북한의 마약과 탈북자 문제에 관해 제보한 신청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정원 정보원인 신청인의 신분과 사진을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22(손배); 5,000만 원; 조정 불성립결정]

18) 서울남부지법 2006. 10. 18. 선고 2006가소139338 판결

- (8)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신청인의 거주지, 나이, 성씨, 소속 길드 등 신원을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73(손배); 1,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3(손배); 1,000만 원; 중재결정 70만 원]
- (9) 드라마 촬영 중 제작진에게 폭행당한 신청인의 성씨 등 신원을 노출하고 인터뷰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 483(손배); 100만 원; 합의(피신청인 사과)]
- (10) 실업급여가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을 제보한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는 했음)[2007서울조정 130(손배); 4,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11) 성폭행당한 신청인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161(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2007서울조정 162(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상동)] [2007서울조정 163(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상동)] [2007경기조정 34(손배); 300만 원; 취하(자진취하)] [2007경기조정 35(손배); 300만 원; 기각결정(피해자 불특정)]

E-2. 범죄가해자, 피의자, 피고인의 초상 등 신원을 노출한 사례

- (1) 신분증 위조 사건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인 신청인의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보도해 피해를 입은 사례[05서울조정129(손배); 3,000만 원; 합의(200만 원)] [05서울조정161(손배); 5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2) 전직 검사인 신청인들이 사건 청탁 및 금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보도를 하면서 신청인들의 실명을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377(손배); 1억 원; 조정불성립결정]

- (3)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청인이 이웃집 생선을 훔친 사실을 보도 하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음성을 방송(모자이크 처리는 했으나 음성변조는 안 했음)하고, 혐의 사실을 부풀려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15(손배); 500만 원; 합의(150만 원)]
- (4) 의경 출신인 신청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된 후, 과거 근무한 소속 부대를 밝히는 등 횡설수설하는 장면을 음성변조 없이 내보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526(손배); 500만 원; 취하(보도삭제)]
- (5)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받고 있는 신청인의 초상과 인터뷰 내용을 아무런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대구조정1(손배); 500만 원; 취하(자진취하)]
- (6) 마약관련 보도를 하면서 2002년에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신청인 모습을 모자이크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동의 없이 방송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 66(손배); 3,000만 원; 취하(언론사 사과+홈페이지 다시보기 삭제)]
- (7) 신청인이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을 폭행했다면서 신청인의 초상과 차량 번호판이 찍힌 사진을 보도자료로 게재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70(손배); 2,000만 원; 합의(200만 원)] [2007서울조정71(손배); 2,000만 원; 합의(700만 원)]

F. 사생활을 동의 없이 공개한 사례

- (1) 인터뷰를 거부하여 실제 인터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불의의 사고로 아들을 잃은 심경을 본지에 고백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현재 거주지를 노출한 사례 [05서울조정165(정정·손배); 1억 원; 합의(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200만 원, 수용)]

- (2) 일반인인 신청인과 모 유명탤런트 사이의 사생활에 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신청인의 인적 상황을 동의 없이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173(손배); 3,000만 원; 직권조정결정(300만 원)->언론사이의신청 후 법원 계류 중 300만 원 지급] [2006서울조정174(정정·손배); 5,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정정), 직권조정결정(손배 1,000만 원)->언론사이의신청 후 1심 법원 판결 1,000만 원(프라이버시권과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 (3) '200년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에 신청인의 집이 전국에서 가장 싼 집으로 조사됐다고 잘못 보도하면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신청인의 집 모습, 주소, 생활환경, 자식관계 등 인적 사항을 노출한 사례[2006서울조정187(손배); 1억 원; 청구액을 2,000만 원으로 감축 후 직권조정결정(25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후 법원 권고화해결정 150만 원 지급] [2006전북조정20(손배); 1억 원; 조정불성립결정-> 신청인 소 제기 후 법원 판결 200만 원 지급]
- (4) '식습관에 따른 비만도 조사'를 위한 독자 모델에 응한 신청인을, 비만체형 독자대표로 소개하면서 신청인의 사진과 신체 사이즈 및 비만정도를 공개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5(정정·손배); 500만 원; 각 합의(100만 원)]
- (5) 극심한 생리통을 앓고 있던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사연 및 치료과정을 보도하면서 동의 없이 수술장면을 촬영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초상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음성변조 안 했음)[2006서울조정386(손배); 2,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5(손배); 2,000만 원; 중재결정 750만 원]
- (6)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신청인 딸의 가슴 진료장면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진료 자체는 촬영에 동의했음)[2006서울조정413(손배); 1,000만 원; 조정불성립결정]
- (7) 가출 청소년과 모친인 신청인들이 복지상담센터에서 서로 만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내보내 초상권과 사생활 비밀을 침해당한 사례[2007서울조정88(손배); 1,0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2(손배); 1,000만 원; 중재결정 150만 원]
- (8) 모 프로그램에 출연한 신청인의 과거 사생활을 방송 중에 노출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한 사례[2007서울조정12(손배); 3,000만 원; 중재합의] [2007서울중재5(손배); 3,000만 원; 중재결정 300만 원]
- (9) 거리로 내몰린 노숙형제의 실태를 보도하면서 노숙형제의 큰 아버지인 신청인의 가족사와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 등이 동의 없이 방영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10(손배); 2,000만 원; 합의(후속보도)]
- G. 음성을 동의 없이 내보낸 사례
- (1) 잇따른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를 응징하기 위해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청인이 성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는 것을 반대한 1년 여 전의 전화인터뷰 음성을 동의 없이 다시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08(손배); 1,0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언론사 이의신청]
- (2) 모 대학교 단과대학 학생회장인 신청인이 총학생회장 탄핵에 대해 찬성한 것처럼 보도하고 허락 없이 녹음·방송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234(손배); 100만 원; 합의(100만 원)]
- (3) '영아 사체 유기사건'에 대해 보도하면서 용의자 P씨의 회사동료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음한 후 음성변조 없이 방송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6서울조정305(손배); 200만 원; 합의(100만 원)]
- (4) 영아살해사건을 다루면서 용의자의 회사 동료인 신청

인과 전화 인터뷰한 내용을 동의없이 보도하여 음성을 침해당한 사례[2006서울조정396(손배); 2,000만 원; 중재합의] [2006서울중재6(손배); 2,000만 원; 중재결정 100만 원]

- (5) 킷서비스 업체의 임금체불에 관한 보도를 하면서, 킷서비스회사 직원인 신청인의 음성을 동의 없이 녹취·방송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7서울조정28(손배); 200만 원; 취하(100만 원 지급)]
- (6) 신청인 아내의 사망을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단정해 보도했고, 신청인의 인터뷰 음성을 동의 없이 방영해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95(손배); 1,500만 원; 합의(100만 원+영상물 판매금지조치)]
- (7)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범인이 살았던 아파트상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신청인의 음성과 사무실 내부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보도해 피해를 입었다고한 사례(모자이크 처리는 했으나 음성변조는 안 했음)[2007서울조정135(손배); 500만 원; 직권조정결정(100만 원) -> 언론사 이의신청 후 100만 원 지급]

H. 성명권, 대화, 저작물 침해 사례

- (1) 성명권 : 모 지자체가 추진 중인 문화공연 행사의 준비 소홀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공연에 참여한 신청인과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동의 없이 실명으로 보도함과 아울러 인터뷰 내용도 왜곡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2007경남조정14(손배); 200만 원; 취하(피신청인 사과)] [2007경남조정15(손배); 300만 원; 취하(피신청인 사과)]
- (2) 대화 : 국회의원이 신청인이 동료 의원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마치 상임위 배정에 대해 수입문제로 불만을 품은 것처럼 편집 방송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2006서울조정253(정정·손배); 5억 원; 각 조정불성립결정]

- (3) 저작물 : 신청인이 2003년 모 여성잡지에 기고했던 서평을 저자인 신청인의 동의 없이 본지에 전재하면서 마치 신청인이 직접 기고한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은 사례[2007서울조정167(정정·손배); 2,000만 원; 각 합의(알림보도문 및 200만 원)]

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1) 전반적 분석

분석기간인 2005년 7월 28일부터 2007년 7월 31일까지 총 2년 간 전체 신청건수 1,599건 중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조정·중재신청건수는 총 160건으로 전체 대비 1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정정·반론·손배 등 개별 청구권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타 인격권 청구별 분류

청구별 분류	청구건수	비율
손배 청구	156	79.6%
정정 청구	35	17.9%
반론 청구	5	2.5%
계	196	100%

<표 2> 기타 인격권 단독·병합청구 현황

청구별 신청사건 분류	신청건수	비율
손배 단독청구 신청	120	75%
손배 병합청구 신청 (손배+정정, 손배+반론 등)	36	22.5%
정정, 반론 단독청구 신청	4	2.5%
계	160	100%

총 160건의 신청사건 중 손해배상청구를 단독 또는 병합하여 신청한 건은 156건(전체 97.5%)으로 거의 전부가 손해배상청구사건임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 보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A-2형과 B-2형 사건에서 손해청구와 정정청구를 병합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정의 실익이 적은 개인과 달리 회사나 업체는 손해배상 뿐 아니라 추락한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정정보도도 같이 받고자 병합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보면 최소 100만 원에서 최고 30억 원에 이르고 있고 손해배상청구액 평균은 1건당 4,540만 원이며 중앙값은 500만 원으로 나오고 있다.

개별 청구건별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96건의 청구건 중 합의(손배를 정정 등으로 합의한 경우 포함), 직권조정결정 수용, 중재결정, 손해금 지급이유 취하 등 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된 비율¹⁹⁾은 72.9%로 같은 기간 전체 사건 평균 피해구제율 61.0% 대비 11.9%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위원회에서

기타 인격권 사건의 해결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기타 인격권 손해청구 액수별 분류

손배청구 액수별 분류	청구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100만 원~1,000만 원 이하	101(64.7%)	77(76.2%)
1,000만 원~5,000만 원 이하	40(25.7%)	28(70%)
5,000만 원 이상	15(9.6%)	5(33.3%)
계	156	전체 평균은 72.9%임

손배청구만 놓고 보면 156건의 손해청구건 중에서 분쟁이 해결되어 실제 손배액이 지급된 건은 70건으로, 금액은 3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에 이르고 있으며, 지급된 손해배상액 평균은 1건당 208만 원이다.²⁰⁾ 금액별로 보면 손해청구액 1,000만 원 이하의 사건 중 76.2%가 합의 및 조정결정이 수용되어 분쟁이 위원회에서 해결되었으며 금액이 커질수록 해결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표 3〉 청구권별 처리 현황

(2005. 7. 28. ~ 2007. 7. 31.)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실질적 피해구제율
		합의	직권조정결정			조정불성립 결정	기각 결정	각하 결정	중재 결정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계속							
전체건	2,245	720	57	61(1)	3	465(10)	48	31	16	819(501)	25	61.0%
	100.0%	32.1%	2.5%	2.7%	0.1%	20.7%	2.1%	1.4%	0.7%	36.3%	1.1%	
기타 인격권사건	196	71	14	12	0	23	8	0	13	55(39)	0	72.9%
	100.0%	36.2%	7.1%	6.1%	0%	11.7%	4.1%	0%	6.7%	28.1%	0%	

* () 안의 숫자는 합의, 조정결정(동의) 외에 보도 또는 손해금 지급이 된 건수임

19) 실질적 피해구제율 = 피해구제건수(합의 + 조정결정중 동의 + 중재결정 + 조정결정중 이의, 조정불성립결정, 취하 중 손해금 지급 · 정정 게재 · 중재합의된 건수 포함) / 조정건수 (계속 · 기각 · 각하결정 건 제외)

20) 직권조정결정 중 이의신청이 된 건까지 포함하면 평균 240만 원이며, 참고로 직권조정결정에 언론사 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하여 법원 소송으로 이어진 건은 12건인데, 이 중 07년 8월 말 현재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금액이 지급된 건은 8건으로 평균금액은 431만 원이다.

나타나고 있다.

〈표 5〉 기타 인격권 침해법익별 처리현황

침해법익	청구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초상권(A, B, C, D)	123(62.8%)	93(75.6%)
피해자, 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E)	42(21.4%)	23(54.8%)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F)	17(8.7%)	11(64.7%)
음성권(G)	8(4.1%)	6(75%)
성명권, 대화, 저작물 등(H)	6(3%)	4(66.7%)
계	196(100%)	전체 평균은 72.9%임

침해법익 중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청구건수는 총 청구건 중 123건으로 전체 기타 인격권 사건 중 차지하는 비율은 62.8%로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피해자·피의자 등 인적사항 공개로 나타나고 있다. 분쟁해결비율로 보면 초상권과 음성권 침해 사건은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데 비해 사생활 침해 및 인적사항 공개 사건은 상대적으로 해결율이 떨어지고 있다.²¹⁾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다루도록 하겠다(성명권, 대화, 저작물은 소수여서 분석에서 제외).

(2) 매체별, 세부 유형별 처리현황으로 드러난 시사점
매체별로 접수된 신청건수를 보면 방송이 85건(53.1%)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신문이 47건(29.4%)로 위원회 전체 사건의 접수 비율(신문 대 방송이 7 대 3 정도)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뒤로 잡지, 뉴스통신 순으로 나타나고 있

다. 처리결과를 보면 잡지의 분쟁해결율이 가장 높고 신문의 경우에는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송은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방송을 세분해서 보면 방송 중 '방송 3사'로 불리는 지상파방송 건수는 73건 중 49건 해결로 분쟁해결율 67.1%를 보이고 있고, 케이블TV는 12건 중 10건 해결로 지상파방송보다 높은 수치인 83.3%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매체별 처리현황

매 체	신청건수(비율)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신문	47(29.4%)	35(74.4%)
잡지	15(9.4%)	13(86.7%)
방송	85(53.1%)	59(69.4%)
뉴스통신	8(5%)	6(75%)
인터넷 신문	5(3.1%)	3(60%)
계	160(100%)	전체 평균은 72.9%임

방송에 대한 접수건이 많은 이유는 음성권 등 방송에 고유한 침해유형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자료화면 또는 인터뷰를 내보내면서 초상이나 사생활이 노출되기 쉬운 매체 특성과 방송 노출로 인한 피해가 타 매체보다 큰 점 때문으로 보인다. 신문에 비해 방송의 분쟁해결율이 낮은 이유는 방송화면을 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상과 음성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방송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개선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피해구제율을 8개의 세부 유형별로 나눠보면 C 유형(동의 범위 넘은 초상권 침해) 및 D 유형(무단 전제)의 분쟁해결비율이 각각 90.5%, 80%로 언론

21) 참고로 90년대 법원의 언론관련 손해배상판결을 분석한 조준원 차장의 논문(각주 11 참조)에 따르면, 청구원인별로 원·피고로 승소율을 분석한 결과, 명예훼손 사건은 원고 승소율이 67.4%인 반면, 사생활 침해(사적사항 공표, 초상권, 음성권 침해) 사건은 승소율이 94.4%이며, 혐의자 또는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피의사실공표 사건은 76.2%에 이르고 있다.

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액을 합의하는 등 분쟁해결이 잘 된 반면, A-2유형(보도와 직·간접 관련 있는 업체의 상호 등을 노출)과 E-1유형(피해자·제보자 인적사항 공개)은 피해구제율이 50% 내외로 저조한 편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가 법원 판결과 달리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주로 종결되는 점과 아직까지 각 유형별로 충분한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기 통계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상당하다고 본다. 피해구제율이 저조한 유형을 보면 아직까지 언론사기사·사고보도 방법 및 취재관행에 있어 특정한 업체나 피해자의 초상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언론사로서는 일반인의 초상과 음성 또는 사건·사고·고발보도에서 공익성이 크지 않은 업체의 상호 등을 게재·방영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든지, 피해자 불특정을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확실하게 하여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의를 받을 때에는 촬영 여부에 대한 고지 및 동의 뿐 아니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지와 동의가 있을 정도의 '명백하고 분명한' 동의여야 하며, C유형이나 D유형같이 안일하게 '동의를 한번 받았으니 괜찮겠지' 내지 '다른 매체에 이미 실린 초상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초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표 7〉 기타 인격권 세부 유형별 처리현황

유형		청구건수	합의 등 분쟁 해결건수(피해구제율)	
A	1	39	32(82.1%)	40(72.7%)
	2	16	8(50%)	
B	1	16	11(68.8%)	26(70.3%)
	2	21	15(71.4%)	
C		21	19(90.5%)	
D		10	8(80%)	
E	1	33	17(51.5%)	23(54.7%)
	2	9	6(66.7%)	
F		17	11(64.7%)	
G		8	6(75%)	
H		6	4(66.7%)	
계		196	전체 평균은 72.9%임	

V. 기타 인격권 침해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요소

1. '기타 인격권' 침해 기준과 위법성 조각사유

가.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른 기준

먼저 피해자 특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위원회 조정·중재사례와 법원 판례에서는 피해자 특정의 기준으로 보도의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모자이크 처리 및 음성변조 정도를 고려해서 주위에서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이면 특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²²⁾ 특히 병원, 식당 등의 업소의 경우에는 입구, 유

22)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할 것인데, 사람의 성명 등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기사나 영상 그 자체만으로는 피해자를 인식하기 어렵게 되어 있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면 기사나 영상이 나타내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니품, 간판, 종업원의 모습 등이 노출되는 경우 업소를 이용한 고객이거나 주위 사람이라면 알아볼 수 있으므로 일반 사례와 달리 주의를 요한다. 그런 후에는 법익 침해의 첫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인터뷰나 사진촬영, 보도 시 촬영 대상자의 승낙 또는 동의 여부²³⁾ 및 동의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사진과 보도 내용이 부정적인가 여부에 따라 기타 인격권 침해 뿐 아니라 명예훼손도 가능하므로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본다.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유로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보도내용이 ①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것이라면, 보도의 취지가 ②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인지, 보도 방법이 대체 불가능하게, ③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인가 여부를 따져서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기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범죄보도피해자 신원 공개는 최대한 제한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보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기준

위원회 중재결정문에서 밝히고 있는 기타 인격권 침해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특정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피해자의 특징을 보건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기사에서 신청인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게임의 명칭뿐 아니라 게임 내에서 신청인이 소속하여 활동한 길드(소속 팀)의 명칭도 공개함으로써 동 게임을 하는 사람이라면 게임 내에서 1년 이상 장기간 일어났던 길드 간 라이벌 내지 갈등 현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거주 지역, 직업, 연령, 성씨 등이 이 사건 기사에 함께 노출되었으므로 게임을 하는 주위 사람들이 기사에서 언급된 김 모 씨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2006. 9. 27. 2006서울중재3(손배) 결정).

(2) 당사자의 동의 관련 중재결정

(가) (앞 생략)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한다고 볼 수 있는 공공적인 사항(영아유기사건) 또는 공공적인 인물(유력한 옹의자)에 관한 보도라 할지라도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신청인과의 전화통화를 음성변조 없이 공개하는 것까지 공공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음성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아야 비로소 정당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2006. 10. 16. 2006서울중재6(손배) 결정).

(나) (앞 생략) 신청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가하면서 본인의 초상이 노출되는 것을 삼가 줄 것을 행사 업체에 요청하였고 사진 촬영 시 참가 회원 전체 사진의 촬영·게재는 동의했으나 동영상 촬영은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초상을 촬영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초상을 게재하였으므로 신청인

23) 특히 집회나 시위의 경우 참가자들이 모두 목시적으로 초상사용을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와 초상 본인이 시위에 앞장서거나 집회를 주도한 경우에만 동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한위수, 앞의 논문, p. 28.), 필자는 촬영자 또는 시위대상에 대해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인 집회참여자에 한정하여 동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의 초상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2007. 4. 2. 2007서울중재4(손배) 결정).²⁴⁾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다음으로 사생활의 비밀에 대해 보건대 가족 중 미성년의 자녀가 가출한 사실이 주위에 알려질 것을 꺼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사건 방송에서 나온 내용, 즉 가출한 자녀 및 모친이 상담지원센터에서 서로 애기하는 장면 등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사실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본 사건 방송이 신청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2007. 3. 20. 2007서울중재2(손배) 결정).²⁵⁾

2. 손해배상금액 산정 시 고려 요소

가. 법원과 위원회의 유사점과 차이점

인격권의 재산적 손해에 대한 논의는 편의상 별도로

로 하고, 주된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만 놓고 볼 때, 실제 위원회나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할 때는 대체로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을 열거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 결과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적정하다는 식으로 금액을 정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지므로 일률적으로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힘들 것이다.²⁶⁾ 위원회에서 사안별, 중재부별로 약간 다를 수는 있겠으나 오랜 재판경험을 갖고 있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중재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마다 변호사가 1인 이상 중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을 보면, 법원과 비슷한 고려 요소를 가지고 손해배상 합의 권고액 내지 결정액을 정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다만 위원회의 조정·중재사례들만 놓고 볼 때 법원과 다른 점을 들자면, 조정절차가 사실관계를 시시콜콜하게 파악하고 고의·과실 및 행위의 불법성 등 불법행위 요건과 효과를 일일이 따지는 정식 재판절차와 달리 양 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이끄는 것에 주력하는 점을 고려해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금액을 제시하므로 법원 위자료

24) 초상 본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초상권 침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승낙 여부 및 승낙의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구체적인 동기에 의해 공표를 승낙하였다더라도 추후 그 초상을 원래의 목적과 다른 형태로 공개하거나 동의의 본래 의미와 목적과는 달리 당사자의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그에게 불리한 방법으로 공표하거나, 또한 당사자가 동의를 한 때에 전혀 고려할 수 없었던 사정 하에서 공표하였다면, 그 공표는 초상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9. 22. 선고 2005가합2739 판결).

25)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공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2006다15922 판결).

26) 언론중재법 제30조(손해의 배상) 제2항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해 법관의 재량과 심증에 의해 손해액이 정해지도록 하고 있다.

산정액보다 다소 융통성이 있고 낮은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²⁷⁾

나. 위원회 중재사례로 본 고려요소

다음은 위원회 중재결정문에서 밝힌 위자료 산정 고려요소이다.²⁸⁾

(1) 초상권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신청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이 사건 기사의 제목과 내용, 성명 및 사진의 게재 경위, 게재된 사진의 크기 및 그 인물에 대한 인식이 용이한 정도, 이 사건 기사의 사회적 주목 정도, 인터넷 사이트 등 유포의 정도, 이 사건 잡지의 성격, 언론사의 규모와 재정적 능력, 보도 후 사과문 게재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 삭제 등 후속 조치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6. 8. 30. 2006서울중재1(손배) 결정).

(2) 음성권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신청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음에도

무단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했을 뿐 아니라 녹음 내용이 음성변조 처리 없이 그대로 재생되어 방송된 점,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순위 및 내용, 신청인의 나이, 직업, 피해자 특성의 정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언론사 접촉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심심한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6. 10. 16. 2006서울중재6(손배) 결정).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관련 중재결정

(앞 생략) 이 사건 방송 프로그램의 성격 및 해당 코너의 기획의도, 방송 시간대, 시청률, 방송 순위, 신청인들의 연령, 신청인들의 얼굴 및 상반신 일부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한 점 등 신원 비공개 처리 정도, 피신청인이 이 사건 방송의 인터넷 다시보기를 중단한 점과 이 사건 방송테이프 판매를 하지 않기로 약속한 점 및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방송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로 및 사과를 표명한 점 기타 이 사건 심리에 나타난 여러 사정(2007. 3. 20. 2007서울중재2(손배) 결정).²⁹⁾

27) 법원과 위원회의 손해배상청구사건 비교는 김동하, 앞의 논문, pp. 44 ~ 50.

28) 법원에서 위자료를 정하는 데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함석천,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2005년 봄호, p. 50)

- (1) 전체신문에서 기사가 차지하는 비중 혹은 방영 부분이 전체뉴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사건과 기사의 크기, 분량, 위치, 제목크기 등)
- (2) 언론사의 규모와 언론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중앙지 혹은 지방지, 지상파 혹은 케이블 방송, 인쇄부수, 인터넷 언론일 경우 접속자수 및 회원 수)
- (3) 원고의 사회적 지위(신청인이 언론보도로 인하여 얼마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고려)
- (4) 유포의 정도(배포 혹은 방송 지역, 일간지, 주간지, 계간지 여부, 방영시간대, 사이트의 인지도, 판매부수, 시청률 등)
- (5) 보도 전 언론사의 확인 및 노력 정도(어느 정도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직접 인터뷰를 하였는지 등)
- (6) 보도 후 정황(정정보도 혹은 반론보도를 하였는지, 판매대기 중이던 신문을 수거하였는지 등)

29) 참고로 법원 하급심 판례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위자료 금액 산정 고려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저명성), 피고 회사의 규모 및 공동피고 대표이사의 지위, 초상권 침해 양태 기타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2005. 9. 7. 2004가합84950 판결) (2) 원고의 직업, 사회적 지위, 원고의 초상이 촬영된 경위와 방송내용, 이 사건 프로그램이 이용된 경위, 태양, 정도와 그 공개범위 및 그로 인한 피고들의 영업적 이익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나타난 여러 사정(2005. 9. 22. 2005가합2739 판결)

VI. 맺으며

지금까지 기타 인격권 침해와 관련된 각종 법규, 특히 언론중재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 관련 조정·중재사례를 유형화하고 분석하였으며, 명예 외의 기타 인격권 침해 판정 기준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을 고찰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언론중재법에 의해 위원회의 '조정·중재대상'이 인터넷 신문까지 확대되고 손해배상청구권이 도입되어 위원회의 '조정·중재범위'가 늘어난 것³⁰⁾뿐 아니라 위원회에 의해 구제되는 '인격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는 것이 언론중재법 시행의 큰 의의라 할 것이다.³¹⁾ 언론중재법에 의해 새로이 도입된 3가지 조항인 인격권 보호조항, 손해배상청구권 조항 및 조정 외 별도의 분쟁해결방식인 중재 조항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 분쟁 사건을 종국적이고도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³²⁾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가 점점 민주화되어 인권의식이 고양되고 경제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지며 기술적으로 인터넷, 디지털카메라 등 정보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정보의 신속한 전파 및 유통이 가능해짐으로 인해 개인과 개인 간, 개인과 기업 간 등 사인 간의 분쟁에서도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 언론중

재법상 인격권 규정뿐 아니라 위원회에서 축적되는 언론분쟁사례와 경험들이 언론분야를 넘어서 다른 민사 분쟁 사건의 기준이 되거나 다른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과거에 인격권 및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논의가 보도의 진실여부를 다루는 명예훼손 부문에서 주로 이뤄졌고, 논의 대상도 법원의 판례나 미국의 판례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기타 인격권과 관련한 조정·중재사례가 점차 축적됨에 따라 손해배상이나 인격권을 다루는 각종 연구 자료에서도 위원회 사례들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위원회를 위해 현행법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조정실무상 고려할 만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언론중재법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법상 인터넷 신문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유사하게 현행 법 규정 해석상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위자료 청구가 대부분인 손해배상사건에서 청구 상한액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청구액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사건을 조정 절차에서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법에 위자료 상한액을 5천만 원 내지 1억 원으로 규정하는 방안, 위원회 규칙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청구의 경우 수수료를 받는 방안 등을 비교·검토하여 위원

30) 양삼승, “언론중재법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2005년 봄호, pp. 6 ~ 9.

31) 정기간행물법상 위원회를 ‘오보로 훼손된 명예’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정·반론보도’를 해주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언론중재법상 위원회는 ‘침해된 인격권’을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중재부의 종국적 판정’을 통해 ‘전반적인 인격권을 보장’해 주는 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이 변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법 시행 이후 07년 8월 말 현재 위원회에서 처리한 중재 사건 15건 중 14건이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 사건으로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재의 장점으로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신청인 입장에서 손해금 협의 부담 및 양보에 수반하는 감정 손상 없이 분쟁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점과 언론사 입장에서도 분쟁을 법원까지 끌지 않고 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회가 운영하는 분쟁해결제도를 소액사건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결하는 절차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조정실무 차원으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상권 등 기타 인격권을 전담하는 중재부를 신설 내지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원에서 전문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위원회에도 기타 인격권 전문 중재부를 갖게 되면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당사자 만족도 역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기존에 접수 처리된 '기타 인격권 침해'의 유형 분류 및 침해 판정 및 손해배상금액 산정 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상담 및 조정·중재에 참고함과 아울러 법원 판례 동향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 외에도 당사자 상호간 윈-윈 할 수 있는 다양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의 장점인 '비정형적, 창조적 분쟁해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³³⁾ 예를 들어 해당 지면·프로그램 책임자 또는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포털사이트의 기사 또는 동영상의 삭제, 영상물 판매금지 조치, PR보도(포지티브 보도), 현물 지급(무료 구독 또는 언론사 출판 서적 지급), 무료 광고 게재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언론사에 대한 분쟁예방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크다. 사진기자, 방송카메라기자, 방송사 외주업체 PD, 편집부 기자 등에 대한 타겟화 된 교육을 통

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취재 촬영하는 경우 명백하게 사전·사후 동의를 받지 않거나 동의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는 경우 대부분 손해배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부득이하게 초상과 음성을 내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철저히 해서 주위 사람들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³⁴⁾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 성폭력 등 특정 강력범죄 피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임과 아울러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 자료(성명, 주소, 연령 등)를 얻는 것은 수사 담당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길이라는 점 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무쪼록 위원회가 법원에 쉽게 다가가기 힘든 일반 국민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자기 권리를 찾도록 도와줌과 동시에 언론으로부터도 공정한 중재자로서 신뢰도를 제고하여 인격권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1차적으로 해결하는 종합적인 인격권분쟁해결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 문헌

- 김덕철(2002).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와 민사상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하(2007, 9). "인격권 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언론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한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정기세미나 주제논문.
- 안상운(1995). "언론보도와 인격권 보호에 관한 연구: 특히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3) 이 외에 조정제도의 장점으로는 ① 시간과 비용의 절감, ② 비밀보장과 사생활보호, ③ 자기결정권의 보장, ④ 감정과 기분의 존중, ⑤ 유대관계의 유지, ⑥ 탄력적이고 비정형적 절차, ⑦ 선례로부터의 자유 등을 들 수 있다(유병현, "ADR의 발전과 법원 외 조정의 효력", <월간법조>, 법조협회, 2004년 6월호, p. 47).

34) 요즘은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상 게시판의 발달로 모자이크 처리와 음성변조를 했더라도 주위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 양삼승(2005, 봄). “언론중재법에 관한 법률 해설”. 『언론중재』.
- 엄동섭(1998, 여름). “언론보도와 초상권 침해 -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 조근주(2000). “TV보도 프로그램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연구”,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준원(2000, 가을). “1990년대 언론 관련 손해배상 판결의 사회과학적 분석”. 『언론중재』.
- 한위수(1999, 가을). “판결에 나타난 언론보도의 문제점”, 『언론중재』.
- 함석천(2005, 봄). “손해배상청구권의 도입과 언론중재”, 『언론중재』.
- 황정규(2007, 9). “언론중재제도의 운영현황과 평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세미나 주제논문.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상담팀(2006). <언론보도피해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제도연구팀. <국내언론관계판결집> 제12집~제14집(2005 ~ 2007).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팀. <조정·중재신청 처리 현황> 2005 ~ 2007.